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6월 일 (제301회)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1년 5월 일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
----------	-----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1년 5월 일

발 의 자 : 황규철·김봉희·정 현·김종필·
김희수·박문희·윤성옥 의원(7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안 제3조)
- 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안 제4조, 안 제5조)
- 다. 식생활교육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안 제6조, 안 제7조)
- 라. 식생활교육의 지원(안 제10조)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5. 예산조치 : 2011년 농업기술원 현황(농산물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 6,000만원-도비 30%, 시군 70%)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올바른 식사예절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정부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충청북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자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도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대표
5. 식품유통업체 대표
6. 소비자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원예유통식품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식생활 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14조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

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자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8조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
한 사항
-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
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
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
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이 추천한 자로 한다.
-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
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